

수산물 · 수산가공품 (재)검사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				처리기간		3일 (정밀검사시:7일)	
신청인	업체명					생년월일			
	대표자								
	주소					전화번호			
검사대상 수산물	품명	개수	중량	포장의 종류	1개의 내용량	생산자	생산지	목적지	가격
검사(생략)받으려 는 항목					검사 희망일 (장소)			발급 받으려는 증명서 종류	

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88조,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, 제115조제1항에 따라
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 (서명 또는 인)

신청인
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, 검사기관의 장 귀하

제출서류	1. 검사신청인 또는 수입국이 요청하는 기준·규격으로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: 그 기준·규격이 명 시된 서류 또는 검사 생략에 관한 서류 1부 2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88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: 「농수산물 품질관리 법 시행규칙」 제1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물·수산가공품의 생산·가공 일지 1부 3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8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: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장의 확인서 1부 4. 재검사인 경우: 재검사 사유서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